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859
----------	-------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정춘생 · 서왕진 · 백선희
김선민 · 이해민 · 황운하
김준형 · 박은정 · 강경숙
차규근 · 이주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남녀 평균 임금의 격차는 30.7%로, 전년도의 26.3% 대비 4.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임금 근로자 비율도 여성 23.8%, 남성 11.1%로 여성근로자가 저임금 노동에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종사하고 있음.

고용과 임금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모든 차별의 집합체라 볼 수 있으며, 넓게 보면 우리나라의 매우 시급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러나 현재 여성고용정책은 고용노동부 소관이나 정부조직법상 고용노동부 소관사무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의 조직 5실·2국·12관·51과 중 1개 과에 불과함. 따라서 고용노동부 차원의 주요업무로서 여성의 고용 및

임금 차별개선을 힘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80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정책이 시급하며, 18세 선거권 도입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참여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청소년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과제임. 따라서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명시하여, 정부의 청소년 정책 추진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부처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변경(안 제26조제1항제16호).

나. 여성가족부 소관사무 중 ‘여성정책’을 ‘성평등 정책’으로 확대하고,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사무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을 추가함(안 제42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제42조의 제목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은 성평등 정책”으로, “청소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등 고용·임금, 청소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승계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사무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42조에 규정된 사무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

③ 이 법 시행 당시 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된 부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의 소관 사무에 관한 부령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개별 법률에 따라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를 담당한 행정기관의 장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의 행위 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사무와 관련하여 소관 행정기관,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성평등가족청소년부장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1. ~ 15. (생 략) 16. <u>여성가족부</u> 17. ~ 19.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6조(행정각부) ① ----- ----- --.
제42조(<u>여성가족부</u>) <u>여성가족부장</u> 관은 여성정책의 기획 ·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u>청소년</u>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2조(<u>성평등가족청소년부</u>) <u>성평</u> <u>등가족청소년부장관</u> 은 <u>성평등</u> <u>정책</u> ----- <u>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성평</u> <u>등 고용 · 임금, 청소년</u> ----- ----- -----.